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62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 장경태・김동아・권향엽

조계원 · 김문수 · 서영석

민형배 · 김영환 · 정일영
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, 기획재정부장관,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,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) 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의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기업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	임원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)
	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
	고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
	의결로 인하여 그 권한행사가
	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
	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어 대통
	령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
	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
	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
	<u>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</u>
	<u>한다.</u>